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. 9. 13 선고 2017가단5920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0. 9. 16 선고 2018나315777 판결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. 9. 13 선고 2017가단59205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한

피 고 B 종종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

담당변호사 이재동

변론 종결 2018. 8. 23

판결 선고 2018. 9. 13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임야 55,019㎡ 중 D의 564분의 549지분에 관하여 1995. 6. 19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160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아버지 망 D은 경북 성주군 C 임야 55,019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를 소유하고 있다가, 1967. 8. 5.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564분의 15지분을 매각한 후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.

나.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4502호, 이하 '특별조치법'이라 한다)에 의하여 1995. 6. 19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제16082호로 이 사건 토지 중 D의 564분의 549지분에 관하여 1967. 12. 15.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의 각 기재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등기의 근거가 된 1994. 10. 7.자 보증서(갑 제2호증의 2, 이하 '이 사건보증서'라고 한다)는 허위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,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

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하는바(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2다116536판결), 이 사건 보증서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석준협